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산재보험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43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산재보험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2

I. 제안경위

2025년 10월 20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신청 건수의 17% 이상이 소송으로 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수수료 비용 등으로 인해 15% 정도만 공인노무사에게 산재신청을 위탁하는 등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산재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산재보험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안 제37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속 사업장 규모, 소득기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 재해발생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요양급여의 신청,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한정애의원안
<신설>	제37조의2(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사업장 규모, 소득기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업무상 재해발생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u>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요양급여의 신청,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나 그 유족(이하 ‘근로자측’)이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이러한 산재 보험급여의 지급을 위한 신청서류가 복잡하여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¹⁾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재력이 되지 않는 등²⁾의 사유로 적절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산재 입증에 어

1) 매일노동뉴스, ‘산재 국선 노무사’내년 상반기 시행하나, 김미영, 2025.10.16.,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89>

2) 매일노동뉴스,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을 기대한다”, 김민, 2021.1.22.,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95>

려움을 겪는 취약노동자를 위하여 무료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으나, 현행법상 보험급여 및 그 결정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산재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① 소속 사업장 규모, 소득기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② 법 제37조제1항제2호3)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 재해발생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요양급여의 신청,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을 통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률대리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 및 산재보상의 공공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3)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있는 등 입법에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등이 포함되는 점, 업무상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확인과 관련하여 소송 등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의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노무사의 조력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안 제37조의2제1항은 ‘소속 사업장 규모, 소득기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선대리인과 관련한 입법례로 「국세기본법」상 국선대리인,⁴⁾ 「헌법재판소법」의 국선대리인⁵⁾, 「행정심판법」상 국선대리

4) 「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인6) 등이 있고, 노동관계법령에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7)가 있음.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2023. 12. 3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 재결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6) 「행정심판법」 제18조의2(국선대리인) 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동자에게 무료로 법률 대리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나, 대리인의 범위를 공인노무사 외에 변호사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산재보험 국선대리인 제도는 취약계층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전문적인 민간시장의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바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0